

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 1호(채권)-변경사항

1.펀드명 : 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

2.정정사유

1)규약

①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2)투자설명서

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갱신

②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③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3)간이투자설명서

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갱신

②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③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3.변경내용

<규약>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「전자단기 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0 이상인 것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</p> <p>2.~10. (기재생략)</p> <p>② (기재생략)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0 이상인 것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</p> <p>2.~10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
<p>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</p>	<p>①~② (기재생략)</p> <p>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,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</p>	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전자등록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,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</p>

	<p>부,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~⑦ (기재생략)</p>	<p>있는지 여부,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~⑦ (현행과 동일)</p>
<p>제44조의2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사유·절차 및 손실·손해 배상)</p>	<p>(신설)</p>	<p>①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44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9조와는 별도로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 <p>3.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</p> <p>② 제1항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보상 금액 : (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× 제2호의 대상 기간 일수 × 제39조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) + (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)</p> <p>2. 대상 기간 : 변경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</p>

		<p><u>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3. 지급방법 :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 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(법190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제1조(변경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<투자설명서>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요약정보			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최근현황 업데이트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 최근현황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최근현황 업데이트	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<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></p> <p>③ 불임1.참조</p> <p><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></p> <p>① 불임2.참조</p>	<p><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></p> <p>③ 불임1.참조</p> <p><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></p> <p>① 불임2.참조</p>
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협회 풀 코드로 변경	붙임3.참조	붙임3.참조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협회 풀 코드로 변경	붙임3.참조	붙임3.참조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변경사항 추가	추가	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갱신 ②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최근현황 업데이트	가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법 시행령 개정 사항	가. 투자대상 ①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	가. 투자대상 ①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

		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(취득 시 신용 평가 등급이 A20 이상인 것)(이하 "채권"이라 함)	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(취득 시 신용 평가 등급이 A20 이상인 것)(이하 "채권"이라 함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최근현황 업데이트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결산일: 2019.11.04. 산출기준일: 2019.11.03.(증가)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결산일: 2020.11.04. 산출기준일: 2019.11.01.(증가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현황 업데이트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 업데이트 (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) 최근현황 업데이트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나. 과세 (4)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	나. 과세 (4)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

		<p>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붙임4. 참조</p> <p>(5)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 <p>붙임5. 참조</p>	<p>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붙임4. 참조</p> <p>(5)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 <p>붙임5. 참조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최근현황 업데이트	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	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 최근현황 업데이트
1. 재무정보	최근현황 업데이트	<p>가. 요약재무정보</p> <p>나. 대차대조표</p> <p>다. 손익계산서</p>	<p>가. 요약재무정보</p> <p>최근현황 업데이트</p> <p>나. 대차대조표</p> <p>최근현황 업데이트</p> <p>다. 손익계산서</p> <p>최근현황 업데이트</p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최근현황 업데이트	-	최근현황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최근현황 업데이트	<p>가. 연평균 수익률(세전 기준)</p> <p>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(세전 기준)</p> <p>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</p>	<p>가. 연평균 수익률(세전 기준)</p> <p>최근현황 업데이트</p> <p>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(세전 기준)</p>

			<p>최근현황 업데이트</p> <p>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</p> <p>최근현황 업데이트</p>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현황 업데이트	<p>가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	<p>가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 <p>최근현황 업데이트</p> 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최근현황 업데이트</p>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p>최근현황 업데이트</p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나. 수시공시 (신설)</p>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1)-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사유·절차 및 손실·손해 배상</p> <p>①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 44 조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39 조와는 별도로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</p>

			<p>이 투자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 <p>3.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</p> <p>②제 1 항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보상 금액 : (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×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× 집합투자규약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) + (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)</p> <p>2. 대상 기간 :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으로 한다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</p> <p>3. 지급방법 :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③제 2 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손해가</p>
--	--	--	--

			발생할 경우 수익자(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	---

<간이투자설명서>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간이투자설명서			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최근현황 업데이트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 최근현황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최근현황 업데이트	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> ③ 붙임1.참조 <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> ① 붙임2.참조	<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> ③ 붙임1.참조 <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> ① 붙임2.참조

붙임1.

-변경 전-

<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>

①납입요건

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
③세액공제

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

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

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

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

-변경 후-

<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>

①납입요건

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계좌)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(“전환금액”이라 함) 한도

③세액공제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12.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.2억원 초과자
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붙임2.

-변경 전-

<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>

①세액공제

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

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.

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%

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%

-변경 후-

<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>

①세액공제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12.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.2억원 초과자
-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붙임3.

-변경 전-
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
명칭	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 (B8396)					
종류	수수료선취- 오프라인(A)	수수료선취- 온라인(A-e)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(C)	수수료미징구- 온라인(C-e)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 고액(C-i)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펀드 등(C-f)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B8397	B8398	B8399	B8400	B8401	B8402
종류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랩(C- w)	수수료후취- 온라인슈퍼(S)	수수료미징구- 온라인슈퍼- 개인연금(S-P)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 개인연금(C-p1)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 퇴직연금(C-p2)	수수료선취- 오프라인- 무권유저비용(AG)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B8403	B8404	B8405	B8406	B8407	BO835
종류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 무권유저비용(CG)	수수료미징구- 온라인- 개인연금(C-p1e)	수수료미징구- 온라인- 퇴직연금(C-p2e)			
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BO836	C0411	C0412			
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	--	--

-변경 후-
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
명칭	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 (K55311B83962)					
종류	수수료선취- 오프라인(A)	수수료선취- 온라인(A-e)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(C)	수수료미징구- 온라인(C-e)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 고액(C-i)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펀드 등(C-f)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K55311B83970	K55311B83988	K55311B83996	K55311B84002	K55311B84010	K55311B84028
종류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랩(C- w)	수수료후취- 온라인슈퍼(S)	수수료미징구- 온라인슈퍼- 개인연금(S-P)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 개인연금(C-p1)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 퇴직연금(C-p2)	수수료선취- 오프라인- 무권유저비용(AG)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K55311B84036	K55311B84044	K55311B84051	K55311B84069	K55311B84077	K55311BO8354
종류	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 무권유저비용(CG)	수수료미징구- 온라인- 개인연금(C-p1e)	수수료미징구- 온라인- 퇴직연금(C-p2e)			
금융투자협회	K55311BO8362	K55311C04115	K55311C04123			

펀드코드						
------	--	--	--	--	--	--

붙임4.

-변경 전-

구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 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 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)
연금외 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

(통상적인 경우)	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해지가산세	없음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	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연금외 수령시 과세 (부득이한 경우)	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변경 후-

구분	주요 내용	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계좌)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("전환금액"이라 함) 한도	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
세액공제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	세액공제율

			(퇴직연금 포함)	
	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	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12%
	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
	※ 지방소득세 별도 ※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- 적용시기 : 2020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- 적용기한 : 2022.12.31. 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.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			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			
분리과세 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)			
연금외 수령시 과세 (통상적인 경우)	기타소득세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		
해지가산세	없음			
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	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연금외 수령시 과세 (부득이한 경우)	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5.

-변경 전-

(5)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세액공제(2015년 1월 1일부터)

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.

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%

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

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%

②과세이연

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

연금수령,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※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-변경 후-

(5)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세액공제(2015년 1월 1일부터)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12%
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적용기한 : 2022.12.31.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.2억원 초과자
-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②과세이연

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

연금수령,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※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